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12. 30(목)

제23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위공직자의
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
(의회사무국 소관)



의회운영위원회
(전문위원)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
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173호

나. 제 출 자 : 강수정의원(대표발의), 김경완의원, 조윤형의원, 윤영희 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1. 12. 23.

라. 회부일자 : 2021. 12. 23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17893호, 2021.1.12. 공포, 2022.1.13. 시행)으로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·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복무 등에 관한 인사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신설함.

3. 주요내용

가. 의원면직의 제한 및 위반자에 대한 문책(안 제2조 ~ 안 제4조)

나.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입법예고 : 2021. 12. 23. ~ 12. 28.(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- 본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임.
 - 안 제2조에서는 의원면직의 제한으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,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, 감사원, 검찰,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,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로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임.
 -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하고,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.
 - 안 제5조에서는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에는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본 규정은 상위법령에 벗어나지 않은 사항으로 본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법·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관련 법령 1부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공무원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472호, 2021. 10. 8., 일부개정]

제6조(임용권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[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 및 지방의회의 의장[시·도회의의 의장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회의 의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**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·휴직·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**(이하 “임용권”이라 한다)을 가진다. <개정 2021. 10. 8.>

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,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0. 8.>

③ 임용권자(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08. 12. 31.]

□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

[시행 2021. 11. 30.] [대통령령 제32175호, 2021. 11. 30., 일부개정]

제1조의3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중징계”란 파면·해임·강등 또는 정직(停職)을 말한다.
2. “경징계”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.